
**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
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**

2021. 1. 27

(주)티플미디어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
제64조의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
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
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1년 1월 27일

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보고서

1. 일반현황 (‘20년 12월말 기준)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(주)티플미디어
대표자	정태연 대표이사
정보통신 주요서비스 /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	온라인컨텐츠공유서비스 / 약 2.6만명
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	약 40억원
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	정태연 대표이사

2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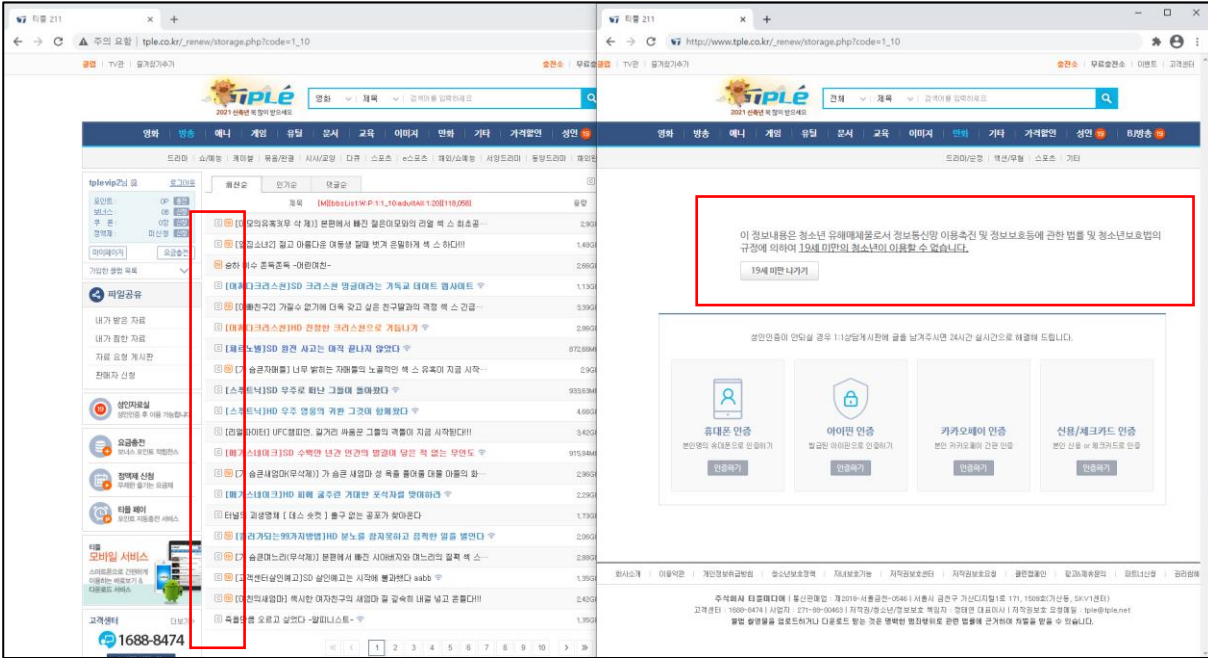
-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위한 시스템(특징기반구축) 운영 : 2016 ~ 현재
- 운영팀 전담부서 및 고객센터(1688-8474) 운영 : 2016 ~ 현재
- 불법촬영물 등 신고 안내 온라인 페이지 운영(<http://redbell.tple.co.kr>) : 2016 ~ 현재

<게시물 신고하기 기능 제공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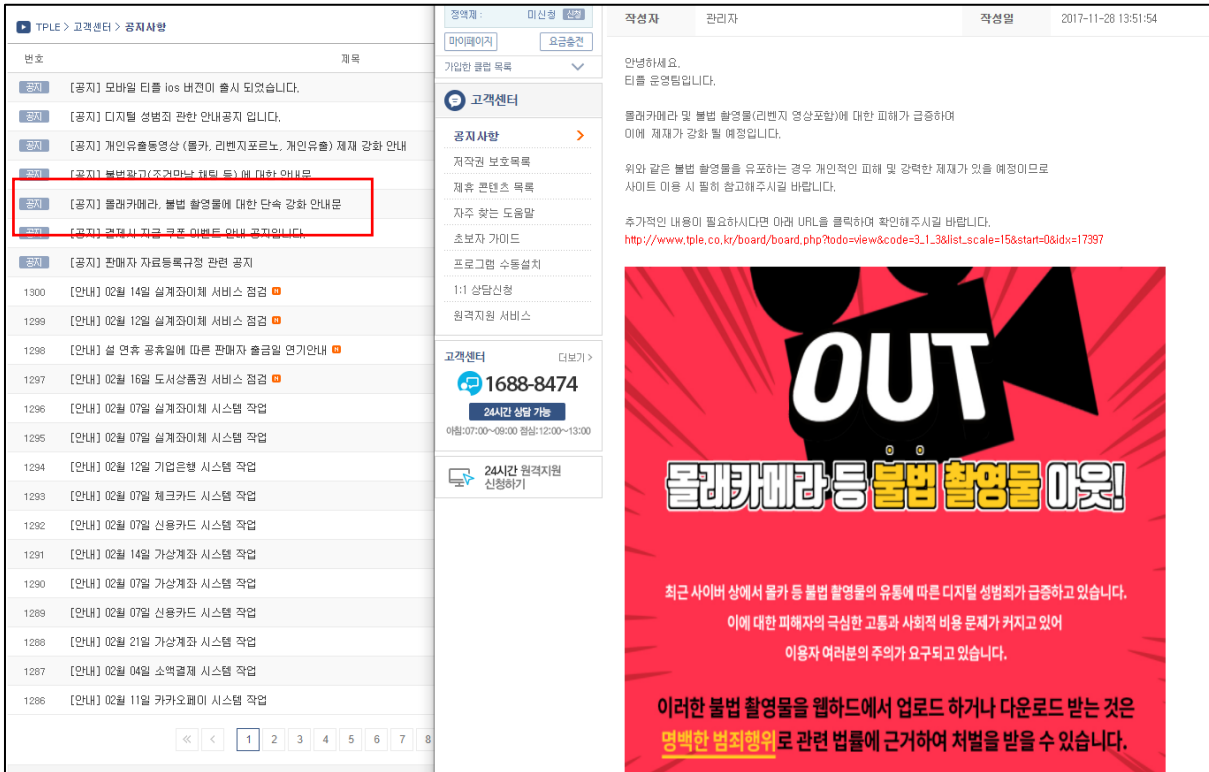
The image shows two browser windows. The left window displays the Red Bell website's reporting interface. A red box highlights the '유해정보 신고하기' (Report Harmful Information) button. Below it, a '참고하세요!!' (Please Note!!) section lists guidelines for reporting, such as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nd using the correct reporting channel. The right window shows the '관리침해 / 유해정보 신고하기' (Report Management Violation / Harmful Information) form, which includes fields for the reporter's ID, category selection, and a text area for the report content.

-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절차 마련 (2020년도)
- 청소년 유해물 표시 및 접근제한 실시 : 2016 ~ 현재

<청소년 유해물 표시 및 접근제한 실시>



-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등 홍보 실시 : 2017. 11월



-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고객 상담센터 운영 : 2016년 ~ 현재

3.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○ 20.12.10. ~ 31. 신고접수 및 처리건수 없음

구분	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	
신고 접수	신고·삭제 요청인	피해자 등	-	-	-	-	-	-	-	-	-	-	-	0	0	
		기관·단체	-	-	-	-	-	-	-	-	-	-	-	-	0	0
		소계	-	-	-	-	-	-	-	-	-	-	-	-	0	0
	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	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	
		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	
처리 결과	자체 삭제·접속차단															
	해당없음															
	방심위 심의요청	심의삭제·차단														
		해당없음														
		각하 등														
	소계															
	삭제·차단 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	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	
		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	

4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○ (관련 규정)

<피해접수 처리 흐름도>



(주)티플미디어(이하 '회사')는 불법촬영물등을 포함 불법음란물에 대한 유해 정보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제재 및 조치를 취하고 예방 차원의 조치를 상시 강구 하여야 합니다.

1.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정책 수립

회사는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증절차 및 청소년유해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.

2.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

회사는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령 및 제재기준,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,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며,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의거, 서비스 약관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음란, 불법 등의 불건전 유해정보를 규제하도록 합니다.

3.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

회사는 유해정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제 조건의 지연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합니다.

4.신고 및 권장사이트 안내

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안내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치 하도록 합니다.

5.담당부서 운영 시행

회사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,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.

○ (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대한 절차)

- 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등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삭제·접속차단을 한다. 단, 확인·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.
- ② 해당 불법촬영물 등 게시자에게 경고문구 등 주의 안내를 보낸다.
- ③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회신한다.

○ (기타 운영관련 사항)

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.

- ①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②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, 3년이상 보관한다.
- ③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.

5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구 분	정	부
성 명	정태연	용인호
부 서	총괄	운영팀
직 책	대표이사	과장
지 정일	2020.12.21	2020.12.21

6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

구 분	교육일	교 육 명	참 석 자	시 간	교육기관
교육실시	2020-12-21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	9명	2시간	자체교육